

2. 목회연구과정 운영규정

제1조(근거) 본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1조 4항에 의거하여 목회자 후보생의 위탁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과정 운영의 목적은 목회연구를 위한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제3조(개설과목) 목회연구를 위한 전공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학기) 수강학기는 6학기로 한다.

제5조(학점 이수시간) 학점당 1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강사선정) 강사 선정은 본교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7조(수강신청) 통상의 수강신청 규정에 준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폐강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수강신청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 개설과목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과목 학점을 인정한다.

제10조(시험) 시험은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과목별로 실시한다.

제11조(이수 단위 및 최대이수학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제12조(수료학점) 수료 학점은 90학점으로 한다.

제13조(졸업고사) 졸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이수증명서) 수강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5조(납입금) 납입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통신교육) 통신을 통한 목회자 후보생 교육은 원칙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학칙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